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927 공갈, 공갈미수,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길상난(기소), 김성찬(공판)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경부터 2024. 5.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고, 2025. 3.경 확인한 계좌내역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공구를 사용한 비용 등 합계 49만 원이 확인되지 않자, 2025. 3. 27.경 및 같은 달 28.경 두 차례에 걸쳐 위 C가 피해자 D 운영의 E에 설치한 저온냉동창고에 지붕이 있어 불법건축물이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25. 3. 28. 00:0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에게 "입금이 안 되었네요. 믿고 기다렸는데 참 너무하네요. 그 영감한테 민원 넣고 물어볼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5. 4. 4. 14:15경 같은 장소에서 "인건비 주면 민원 취소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5. 4. 9. 09:50경 같은 장소에서 "주기 싫으면 그렇게 하세요, 불법건축물 시공, 경산시청으로 민원 넣을게요, 공구사용 3일입니다 13x3 39만 원, 49만 원입니다, (계좌번호 1 생략) 카카오뱅크, 불법 건축물시공자 처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불법건축 시공에 따른 처벌 내용과 관련된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5. 4. 9. 09:5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5. 4. 9. 09: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피해자 B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회신하자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야? 뭐죠? 줄돈 안주고 떼먹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원 잘 받길 바랍니다, 경산시 민원 작살납니다, 지나간 일이고 책임 받으시면 됩니다, 불법하지 마세요, 공무원도 찔리고, 작업장도 불법? 5군데 불법이면 소문나면 누가 할까요? 욕한거 얼마 배상하실래요? 이제 돈 받았는데 누가 사기꾼입니까? 문자는 불법공사 건축주들에게 모두 보내도 되나요? 공구 고장내고 제가 그동안 일 못했어요, 5백, 욕한 값, 욕한 값 5백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욕한 값 주실건가요? (계좌번호 1 생략) 카카오뱅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25. 4. 9. 00:53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OO 사장이 인건비 안주어서 민원 신고합니다. 조사 들어갔죠. 하루 일당 안주는 업체 시키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5. 4. 10. 23:10경 위 B이 피고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접수증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면서 "사장님 믿고 했는데 뒤통수 때 리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5. 4. 11. 01:50경부터 18:09경 사이 "불법하지 마세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내일 불법인지 보죠, 인건비 안준 사람이 누구죠? 뒤통수치는 게 누구죠? 앵무새 사이트스가 많죠? 불법은 협박이 아닙니다. 신고했어요, 조사 받으시고 하면 됩니다. 저는 중재할라고 했어요. 조사 잘 받으시고 원천이 누구인지 보세요, 내용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양성화는 없어요 불법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이 문자 내역 제출)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이 문자 내역 등 제출) -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경산시청에 접수한 민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공갈 피해액은 49만 원으로 크지 않은데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채권관계의 당사자도 아닌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까지 협박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범행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면 수단의 불법성은 개의치 않는 외골수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바 반복되는 법질서 위반에 대한 제동과 경고가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2

판사 노종찬 _____